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를 위한 Q & A 안내서

대한내과학회 표준진료지침위원회

(2022년 1월 14일 배포)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되어 지난 1년 3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재택치료를 이용하였고, 그 중 약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 받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 의료대응체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진자가 기초역학조사 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관리의료기관을 즉시 연계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1일 2회(집중관리군은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경구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의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지역별로 지정·설치되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소방청간 응급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 이송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재택치료에 낯설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재택치료 안내서 5판,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참조하여 "대한내과학회 표준진료지침위원회"에서 Q & A를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감염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FAQ 목차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란 무슨 뜻인가요? .....	4
Q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4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의 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5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5
Q5.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6
Q6.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Q7. 단기·외래료센터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7
Q8.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7
Q9.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8
Q10.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8
Q1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	9
Q12. 재택치료 안내문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	9
(재택치료 영상, 재택치료 키트 영상, 체온 측정 영상, 산소포화도 측정 영상, 응급상황 대처법 영상, 생활수칙 영상, 폐기물 처리법 영상, 앱 사용법 영상)	
Q13.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10
Q14.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

Q15.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11
Q16. 재택치료 시 보호자의 생활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13
Q17. 재택치료자의 진료지원(비대면진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4
Q18. 재택 치료 중 배달음식이나 택배는 수령 가능한가요? -----	15
Q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중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
Q20.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17
Q21. 공동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17
Q22.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	17
Q23. 확진자의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8
Q24.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18
Q25. 다른 나라는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	19
별첨. 동영상 QR code 모음 -----	20
참고문헌 -----	21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란 무슨 뜻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들 중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또는 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은 환자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집에서 받는 치료'를 '재택치료'로 정의합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Q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재택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환자에 대해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 환자를 분류하고, 재택치료(건강관리·격리관리)\*를 결정합니다. 단, 필요시 단기·외래진료 센터와 연계가 되며(Q7 참조), 필요에 따라 격리해제 또는 중증화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로 건강관리+격리관리 7일과, 격리관리 3일로 구성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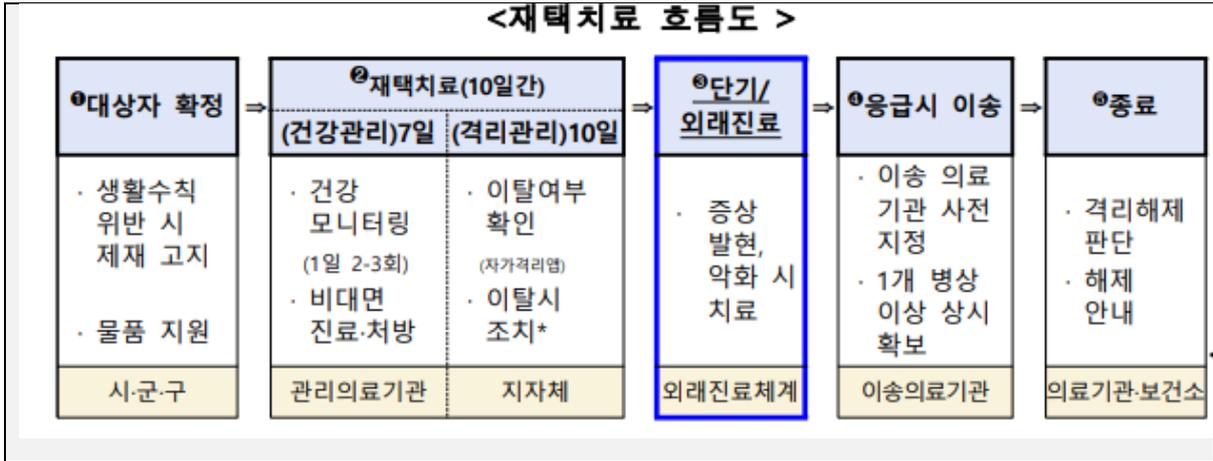
근거: '코로나19재택치료자 건강관리기간 운영 관련 긴급 안내' (중수본-39223)

**코로나19 재택치료 어떻게 하나**

- 대상자
  - 환자 상태** 입원요인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자(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환경 상태** 감염 취약한 주거환경이 아니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관리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환자·보호자의 동의**
- 재택치료 기간
  - 무증상** 확진일 이후 10일간
  - 유증상** 증상 발생 후 10일간
- 집에서 어떤 관리 받나
  - 확진자용**
    - 재택치료 키트 제공: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 비확진자용**
    -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실드,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손소독제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
- 진료 지원**: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 (전화, 화상통신)
- 격리 관리**: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여부 확인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 흐름도 >**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의 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입니다. 단,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예,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대상입니다.

한편, 1)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2)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3)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4)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5) 투석 환자, 6) 약물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환자, 7)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8)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9) 외상 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10) 복통, 진통, 질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11)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예,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등 환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의료기관 입원** 고려 대상입니다.

근거: 코로나19 대응지침 수정의견 송부 (중수본-40456, 2021.12.13.)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중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Q15 참조). 또한,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Q20 참조). 재택치료 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단,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 1회로 대체 가능,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됩니다(예,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 실시) (Q7, Q14 참조)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0일 기준) >**

(단위: 원)

구분	가구원 1명	가구원 2명	가구원 3명	가구원 4명	가구원 5명 이상
현행 (입원·입소·재택치료자)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

**Q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A.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6.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2) 70세 이상 확진자입니다.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70세 이상 확진자 및 보호자는 예방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동거인은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됩니다.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하며,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Q7. 단기·외래료센터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 진료 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과거 재택 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되어 있습니다.

\* 단기진료센터: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동선 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Q8.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 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

해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외의 경우 이송 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Q9.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A.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단,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 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 변기 사용시 변기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10.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 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역시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등).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1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A.**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역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가 치료 8일 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격리해제 가능하며,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격리해제 시, 해제 후 6~7일차).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다만, 첫 7일간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선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8일차(12:00)부터는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환경 등)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Q. 재택치료 안내문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A.**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동영상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특히, 재택치료 시 필요한 체온측정 방법, 산소포화도 측정 방법, 폐기물 처리방법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QR Code 모음 참조).

**전체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1,](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1)

**재택치료 설명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2,](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2)

재택치료 키트 수령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3](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3)

체온 측정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4](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4)

산소포화도 측정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5](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5)

응급 상황 대처법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502](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502)

재택치료자/공동격리자 생활 수칙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7](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7)

폐기물 처리법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500](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500)

필수 앱 사용법-건강관리용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80](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80)

필수 앱 사용법-격리관리용 영상: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9](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25479)

**Q13.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A.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 요인 등 재택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

**Q14.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으로부터 비대면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과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외래진료

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래진료 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 또는 119구급대로 연락하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됩니다.

**Q15.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성인/이부프로펜 시럽-소아),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 코프 시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세트는 비닐장갑 50매, KF 마스크 10매,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검정비닐봉투, 자가진단키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물품으로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소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세트 사용법 (질병관리청)**

### 해열제, 동봉된 복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성인용 해열제 소아용 해열제 성인용 감기약 소아용 감기약



\* 의약품은 상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소독제는 수시로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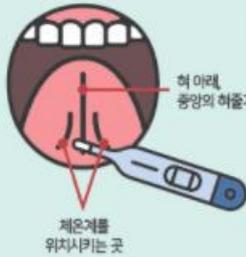
### 폐기물 소독 시 사용하세요



### 체온계, 올바르게 측정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체온을 측정하지 않게 되면 체온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혀 아래, 즉 혀뿌리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을 정하여 체온계를 위치시킵니다.



2 혀로 체온계를 눌러 입을 다물립니다.



3 체온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체온계를 살짝 붙잡습니다.



#### 기초 체온 측정 포인트

- 아침에 눈을 뜨지마자 누운 자리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중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이 아닌 코를 통하여 호흡하십시오.
- 매일 아침, 감온부를 혀 아래쪽, 즉 혀뿌리 근처의 동일한 자점에 체온계를 위치시켜 측정합니다.
- 매일 아침,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각에 측정합니다.
- 체온 측정 후에는 측정된 체온을 기초 체온표에 기록합니다.
- 동봉한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표시창이 위로 향하도록 잡고 혀 밑에 넣어 입을 다문 후 측정해주세요

#### 체온계 방향



### 산소포화도, 정확히 측정하려면?



검지손가락을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넣고 약 5초간 기다린 후 화면의 숫자를 확인해주세요.



시·도 의료전담팀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측정한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건강상태와 함께 알려주세요.** 보건소 담당자와 모바일앱 직접 입력을 약속하셨다면, **측정결과를 모바일앱에 입력해주세요**

개인보호구 세트 사용법 (질병관리청)



**Q16. 재택치료 시 보호자의 생활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하고, 재택치료 전담팀·관리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1일 2~3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하고,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해야 합니다. 수유 및 이유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도 가능합니다. 만약,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라면,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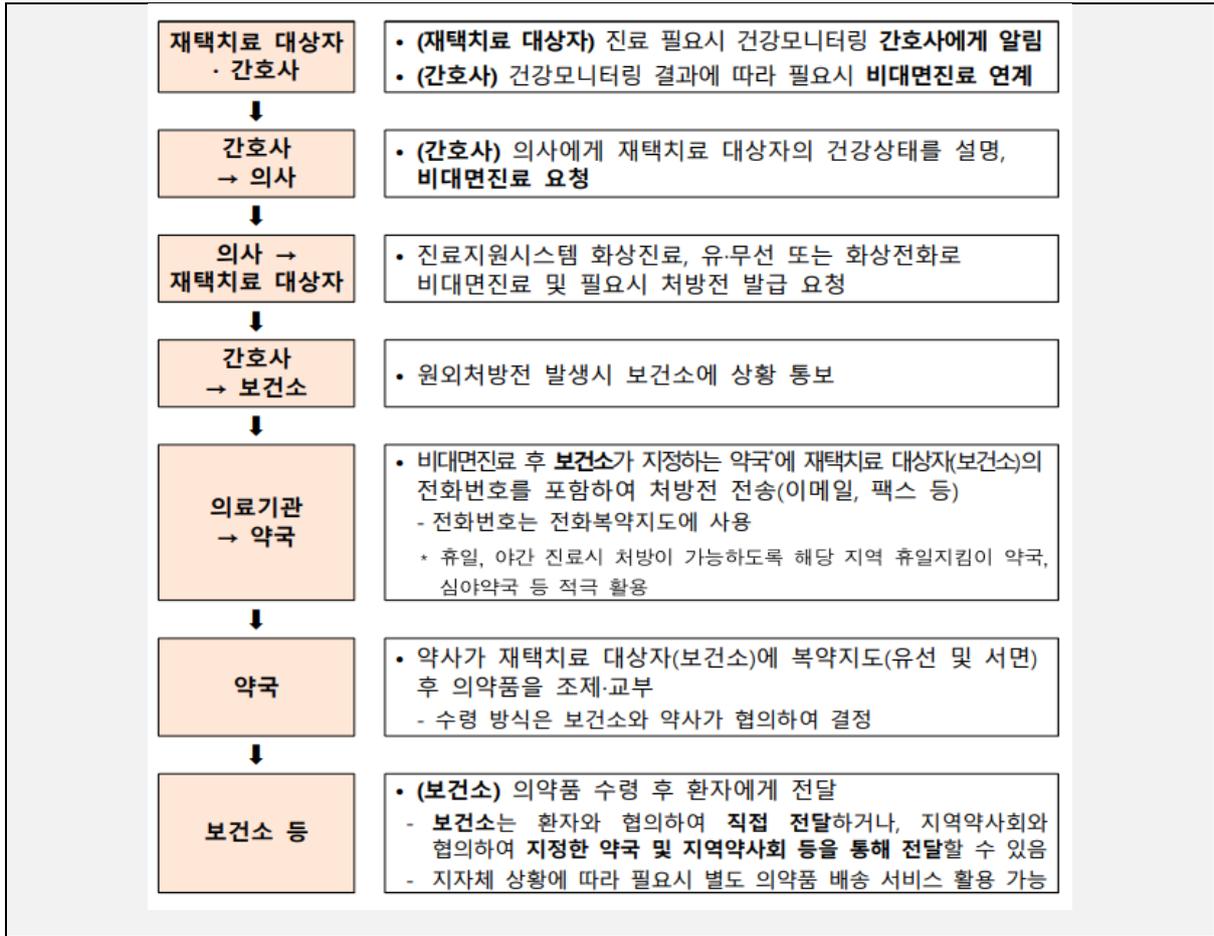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시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추가 격리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발생 시 재택치료 전담팀(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세탁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해야 합니다. 이때,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재택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을 시행하고,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해야 합니다.

격리치료 해제 시 재택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근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

**Q17. 재택치료자의 진료지원(비대면진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 요청 시 또는 건강모니터링 중 지속적 발열, 호흡곤란, 활력징후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비대면진료 연계가 됩니다. 비대면진료 후 응급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응급이송체계에 따르게 되며, 코로나 외 질환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Q18. 재택 치료 중 배달음식이나 택배는 수령 가능한가요?**

A.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중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5판에서는 재택치료자용 생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말아 주세요.
-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에만 계세요.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때는 반드시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세요.

■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방에 혼자 있도록 하세요.
- 방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세요. 2미터 이상 가족과 떨어져 있으세요.
- 다시 모두 모이기 위해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콜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 이럴 때는 재택치료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아픈데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
-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 ① 먼저, 숨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고 손가락 산소 측정기로 재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바로 재보세요.  
☞ 94%보다 낮게 나오면 빨리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세요.
  - ② 숨이 차지 않아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 √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참, 헐떡거림.
      -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일반쓰레기) ①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①소독 후 분리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Q20.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단,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환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환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도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Q21. 공동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A. 공동으로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먼저 격리해제 되는 자의 해제일이 재택치료중인 다른 가족의 건강모니터링 기간(7일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공동격리를 지속해야 하지만, 건강관리 기간(7일간)이 종료되고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날(8일차)부터는 격리가 해제되어 외출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격리해제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동거인이 거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재택치료 해제 일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Q22.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A. 동거인,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자라면 환자가 치료 8일 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격리해제 가능하며,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만약, 예방접종 미완료자라면,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 발현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추가 격리 중 PCR 검사(본인 소유 차량 등 이용)가 필요합니다.

**Q23. 확진자의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한 후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한 후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10일이 경과한 11일째 정오(12:00)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한편,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Q24.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A.**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 연락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 추진단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대상입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구분	허용 범위	준수 사항	관리 방안
보호자	· 본인 진료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추진단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추진단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그 외 공동 격리자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추진단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Q25. 다른 국가에서도 재택치료를 하나요?**

**A.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입원율	약 20%	6.95%	13.8%	4.69%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코로나19 확진자</li> <li>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 접종 완료, 만 12~69세,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재택요양 (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택치료 원칙</li> </ul>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li> <li>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li> <li>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앱(라인) 기반 환자가 1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li> <li>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li> <li>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li> </ul>
응급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li> <li>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li> </ul>
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공무원 배정, 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li> <li>위반 시 고발조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부에서 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li> <li>급여손실의 경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li> <li>필수용품 집으로 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거리 외부 출입 제한</li> <li>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거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li> </ul>

별첨. 동영상 QR code 모음

동영상 전체 영상



재택치료 영상



재택치료 키트 수령 영상



체온 측정 영상



산소포화도 측정 영상



응급상황 대처 영상



생활수칙 영상



폐기물 처리 영상



건강관리용 앱 사용 영상



격리관리용 앱 사용 영상



## 참고문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채택치료 안내서 5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12월 1일)